

차 례

결과보고서 요약문

2018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내용

- 1) 당초계획
 -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본방향
 - 기대효과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 참여인력
- 2) 실제추진 현황
-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 관련분야 기여도

2. 예산

- 1) 예산 계획
- 2) 실제 예산 집행

3.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기타

4.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결과보고서 요약문

사업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		
사업명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신상도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응급의료연구실	응급의료연구실장
사업기간	2018.4.1.~2019.2.28	사업비	

1. 사업목표

북한 재난의 역학적 고찰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재난을 일반재난, 특수재난, 대규모 난민의 세 가지 유형별로 예측하고, 북한 재난 대응 재난의료 지원을 위한 국내 법·제도 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2. 사업의 내용

- 1) 제 1세부 과제: 북한 재난의 역학적 고찰과 발생 가능한 재난 예측
- 2) 제 2세부 과제: 북한 재난 대응 재난의료 지원을 위한 국내 법·제도·체계 구축

3. 사업의 성과

1) 제 1세부 성과: 북한 재난을 역학적으로 고찰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재난을 예측하고자 하였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교차 비교하여 자연 재난 및 인적 재난으로 사전에 정해진 변수에 따라 정리하였음. 이를 통해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개의 재난(자연 재난 23건, 인적 재난 8건)을 확인하였으며, 자연 재난의 대부분이 태풍 및 홍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2) 제 2세부 성과: 북한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관련 특별법을 제안하였음.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북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과 긴급구호의 주관부처는 통일부가 말고 의료지원 등을 위한 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음.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

1. 사업 내용

1) 당초계획

□ 개요

- 사업명: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
- 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
- 총 사업비: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난의료지원체계가 필수적임.
- 북한에서 어떤 재난이 그동안 발생해 왔고,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지에 대한 역학적(epidemiological) 자료와 분석이 부족한 상황임.
- 북한 재난 발생에 대한 역학적 고찰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북한 재난을 역학적으로 고찰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북한 재난의 역학적 고찰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재난을 일반재난, 특수재난, 대규모 난민의 세 가지 유형별로 예측하고,
- 북한 재난 대응 재난의료 지원을 위한 국내 법·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기본방향

- 제 1세부 과제: 북한 재난의 역학적 고찰과 발생 가능한 재난 예측
- 제 2세부 과제: 북한 재난 대응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국내 법·제도·체계 구축

□ 기대효과

-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
- 북한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운영 가능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확보
- 통일 후 한반도 재난의료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기틀 마련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일 정	추진 내용
2018. 04. ~ 2019. 01	문헌고찰
2018. 04. ~ 2018. 08.	사례고찰
2018. 06.27	북한 재난 워크숍
2018. 09.03 ~ 09.21	1차 델파이 조사
2018. 09.28	전문가 자문회의
2018. 11.25 ~ 12.11	2차 델파이 조사
2019. 01.29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 심포지엄

□ 참여인력

○ 책임자

성 명	대 학	학 과	직 급
신상도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 내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응급의료연구실			

○ 주요참여인력

성 명	소 속	직 급	이 메 일
송경준	보라매병원	교수	
위대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교수	
이승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수	
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노영선	응급의료연구실	연구부교수	
공소연	응급의료연구실	연구부교수	
선경민	서울대학교병원	진료조교수	
최세원	서울대학교병원	진료조교수	
정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조교수	
김기홍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사	
김솔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조교수	
김대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사	
강셋별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임상강사	
김수희	응급의료연구실	연구보조원	
오영진	응급의료연구실	연구보조원	
김현영	응급의료연구실	연구보조원	
장호정	응급의료연구실	연구보조원	
권민지	응급의료연구실	연구보조원	
김가현	응급의료연구실	연구보조원	
장수민	응급의료연구실	연구보조원	

2) 실제추진 현황

□ 제 1세부 과제: 북한 재난의 역학적 고찰과 발생 가능한 재난 예측

○ 연구방법

- 문헌 고찰

- 1인이 검색하였고, 검색엔진(구글 및 네이버)과 ‘위키피디아’를 통하여 검색하였음. 아래 34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하였고, 재난의 유형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음.
- 한국어 단행본 및 논문 8편을 참고하였고, ‘North Korea Disaster’로 검색하여 확인된 국제연합뉴스(UN News) 등의 국제기구 자료 및 비정부기구(NGO)의 자료 8개를 참고하였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2인이 검색하였고, 195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총 4종의 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의 6,137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으며 이 중 북한 사고(1,646개), 북한 홍수(432개)의 기사가 있었음. 중복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 31개의 재난이 확인됨.
- 1985년부터 2016년까지 22년간 발생한 사건의 발생건수와 구성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인명피해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건과 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 인명피해(사망자/부상자) 구분 없이 피해자 수로만 기록된 사건은 제외하였음. 동일한 사건에 대한 최종 출처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적혀 있는 것을 출처로 하였음.

재난 유형	재난 세부유형	재난 종류	재난 유형	재난 세부유형	재난 종류		
자연재난	1. 지구물리학	지진 중력 사면 운동 화산	인적재난	산업 재해	화학 약품 붕괴 폭발 화재 가스유출 중독 방사선 기름유출		
	2. 기상학	극한 기온 안개 폭풍 홍수			수송 사고	그 외 비행기 도로	
	3. 수문학	산사태 파랑작용 가뭄				그 외	열차 수로 붕괴 폭발 화재 그 외
	4. 기후학	빙하홍수 물불 전염병					
	5. 생물학	해충/기생충 동물 충돌					
지구 밖	우주기상						

그림 1 재난의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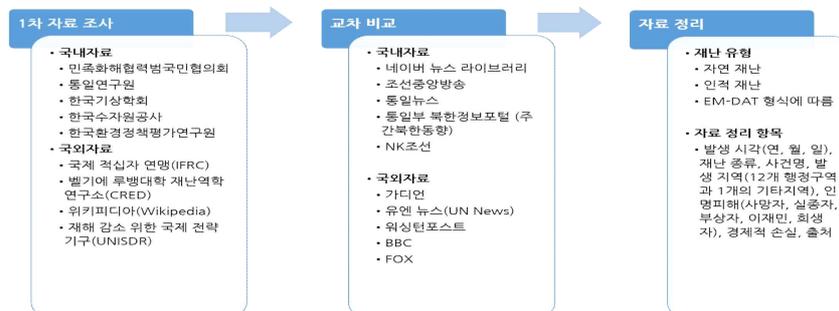


그림 2 북한 재난에 대한 문헌 고찰 방법

□ 제 2세부 과제: 북한 재난 대응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국내 법·제도·체계 구축

○ 연구방법

- 문헌검색

- Pubmed, Google Scholar,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 공적 개발원조 관련 단체의 웹사이트를 검색함.
- 핵심어로 ‘국내’, ‘해외’, ‘북한’, ‘재난의료지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를 이용함.
- 검색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골자로 ‘북한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북한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안함.
- 상기 제안한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대하여 재난, 법, 체계 분야의 전문가에게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합의 일치도를 평가함.
-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여 법률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였음.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제 1세부 과제: 북한 재난의 역학적 고찰과 발생 가능한 재난 예측

○ 연구결과(표1, 그림3, 그림4)

- 연도별 재난 발생 현황

- 연도별 자연재난 발생건수와 인적재난 발생건수를 파악함
- 2007년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북한 전체 인구의 비스듬한 약 2,4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1,500명 이상이 사망하였음.
- 자연 재난 중에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크며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2007년 250명, 2012년 447명, 2016년 552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중 재난 의료 수요가 필요한 재난은 모두 풍수해였음.
- 인적재난에서는 룡천역 사건 외에는 사망자 수만 확인되었음.

표1 연도별 재난 발생 건수

연도	자연재해		
	태풍	홍수	총계
1985	0	1	1
1995	1	1	2
1996	0	1	1
1999	1	0	1
2001	0	1	1
2002	0	1	1
2003	0	0	0
2004	0	0	0
2005	0	1	1
2006	0	1	1
2007	0	1	1
2008	0	0	0
2009	1	0	1
2010	1	0	1
2011	1	2	3
2012	2	1	3
2013	0	1	1
2014	0	0	0
2015	1	1	2
2016	1	1	2
총계	9	14	23

연도	인적재난			
	열차사고	폭발	붕괴	총계
1980	0	1	0	1
1985	1	0	0	1
1989	1	0	0	1
1991	0	1	0	1
1993	0	0	1	1
1997	1	0	0	1
2000	1	0	0	1
2004	1	0	0	1
총계	5	2	1	8

- 연도별 인명 피해 현황



그림3 연도별 인명 피해 현황(자연재난)

- 지역별 자연 재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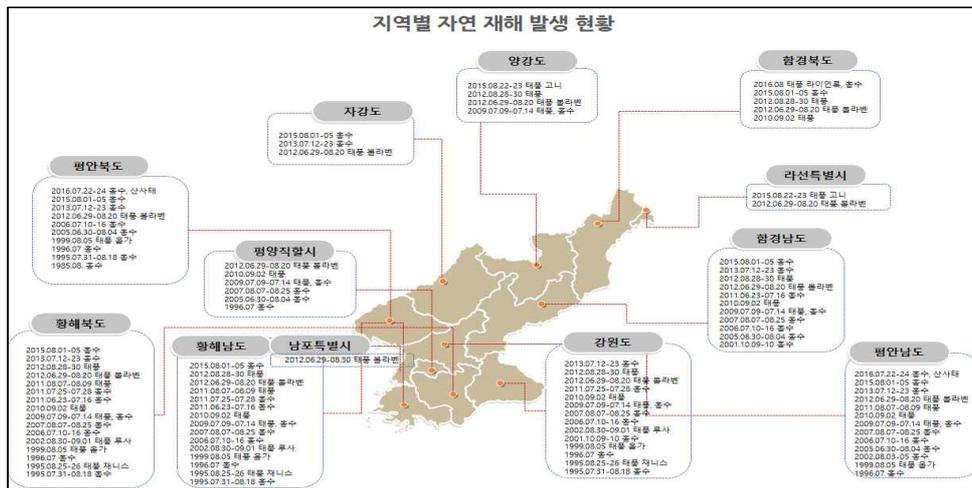


그림4 지역별 자연 재해 발생 현황

○ 고찰

- 북한 재난을 역학적으로 고찰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재난을 예측하고자 하였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교차 비교하여 자연 재난 및 인적 재난으로 사전에 정해진 변수에 따라 정리하였음.
- 이를 통해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개의 재난(자연 재난 23건, 인적 재난 8건)을 확인하였으며, 자연 재난의 대부분이 태풍 및 홍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 제 2세부 과제: 북한 재난 대응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국내 법·제도·체계 구축

○ 연구결과

-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대하여 재난, 법 체계 분야의 전문가에게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합의 일치도를 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여 법률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였음.
 - 법률에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북한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제5조(북한긴급구호의 종류), 제6조(북한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제6조의 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7조(북한 긴급구호의 개시), 제8조(민·관합동 북한긴급구호협의회),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제10조(북한긴급구호본부), 제11조(북한 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2조(북한긴급구호대장), 제13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제14조(북한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5조(북한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항목에 대해 제안함.
 - 시행령에서 제1조(목적), 제2조(북한긴급구호의 종류), 제3조(북한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4조(대규모 북한재난의 범위),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제7조(북한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북한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9조(권한의 위탁) 항목에 대해 제안함.
 - 상기 ‘북한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하여 해외 저개발국에 대한 의료지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및 관련 법률들에 대한 법조인 전문가에게 델파이 설문조사를 시행함.
- 델파이 설문조사

- 델파이 설문조사의 문항으로 기본 인적사항, 연령, 소속기관, 전공, 해당 전문 분야 종사기간을 조사하였음.
- 설문 문항에 대하여 1) 북한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별도 근거 법안의 필요성, 2) 법안의 내용, 3) 긴급구호, 주관부처 및 전담조직, 4) 예산, 5)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인력과 교육 및 훈련, 6) 북한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인력에 대한 신분보장 및 보상의 6개 범주 질문에 조사를 실시함.
- 1차 전문가 조사는 대상자 10명 중 9명이 회신하여 90.0%의 응답률을 보였고, 회신을 준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7명이 회신하여 77.8%의 응답률을 보임. 1차 조사 기준 평균연령은 47.1(±5.3)세이고,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응급의학을 전공한 전문가는 8명(85.7%)이었으며, 전문 분야 종사기간은 평균 17.6(±6.1)년이었음.
-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 동의하였음. 다만 그 법적 근거를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법률로 만들지, 기존에 있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항목을 추가해서 개정할지, 대한적십자사 정관 45조(업무)에 남북한 협력 및 구호 사업 항목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북한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제외한 북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송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활동을 포괄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짐.
- ‘긴급구호 주관부처 및 전담조직’에 대해서 통일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 85.7%가 동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음. 주관부처에서 북한 긴급구호 기본대책을 수립할 때, 북한 긴급구호대 편성, 북한 긴급구호 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검수,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북한 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북한 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기타 필요로 생각되는 긴급구호 기본대책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이룸.
- 민·관 합동 북한긴급구호협의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100% 동의하였고, 긴급구호 활동 주관부처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수송기 또는 차량 파견을 요구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을 요구하는 것, 소방청장에게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 구성·파견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100% 동의하였음.
- 현재 북한 긴급구호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의 전담조직은 없는 상태로, 해

외 긴급구호와 동일하게 한국국제협력단이 북한 긴급구호 업무를 위임·위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전담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함.

-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주체: 북한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보건의료 지원 활동의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경우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가 주체가 되어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북한의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85.7%가 동의하여 합의를 이룸.
- 북한 긴급구호대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원, 보건의료지원팀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소방공무원이나 자원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이들 인력에 대한 교육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룸.
- 북한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인력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대우를 할지, 민간인 신분으로 대우를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이 인력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상의 손실부터 질병, 상해, 사망까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이룸.

- 자문회의

- 자문회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고려 시 남북한의 교류가 빈번해 질수록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에 필요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국내법을 개정하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든 재난 의료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체계가 필요함에 대해 합의함.
- 자문회의 결과 통일부가 주관할 하되 실무적인 전문성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같은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논의함.

○ 고찰

- 북한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관련 특별법을 제안하였음. 북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과 긴급구호의 주관부처는 통일부가 맡고 의료지원 등을 위한 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음.

□ 관련분야 기여도

- 기후와 관련된 풍수해가 북한의 주요 재난 원인이며, 예측된 북한 재난 발생 시 남한의 재난의료 지원체계를 통한 협력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는 남북 협력을 위한 주요 안건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연구에서 정리된 자료를 통하여 향후 북한에 재난 발생 시 국내보건의료지원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있어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2017년 선행과제인 ‘통일대비 응급의료체계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후속 과제로 ‘통일기반 구축사업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 연구를 진행함.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2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시행하였고, 계획된 목표를 충실히 수행함.
 - 문헌고찰 및 사례고찰을 통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수렴함.
- 사업의 효율성
 - 문헌고찰, 델파이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심포지엄을 통한 통일대비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함
- 사업의 영향력
 - 예측된 북한 재난 발생 시 남한의 재난의료 지원체계를 통한 협력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는 남북 협력을 위한 주요 안건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향후 북한에 재난 발생 시 국내보건의료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있어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북한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운영 가능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통일 후 한반도 재난 의료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기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북한에서 발생한 재난은 외부에 보고된 내용이 제한적이었음. 북한 내부에서 재난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재난을 발표할 경우 피해액 및 인명피해 수를 축소하여 발표하는 경향이 있음.
- 본 연구는 후향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조사하여, 문헌마다 정의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음.
- 본 연구는 동북아의 저소득 국가에 대한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통일기반구축사업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통일응급의료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꼭지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통일응급의료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통일응급의료연구회 설립 및 운영 계획)
- 통일응급의료 교육·홍보 사업(통일응급의료관련 심포지엄 개최, 통일응급의료 세미나, 통일응급의료 전시회)
- 남북교류 사업 중 응급의료지원(남북교류 지원, 문화행사지원, 체육행사지원, 경제협력사업 지원 등)
- 통일응급의료 국제협력체계 구축(동북아 응급의료 역량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북한 현지 방문 교류 검토, 북한 응급의료전담자 초청사업 고려)

2) 건의사항

사업 진행 관련

- 특이사항 없음.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특이사항 없음.

기타

- 특이사항 없음.

3. 관련자료

대표적 사업 실적

- 북한 재난 대응 재난의료 지원을 위한 법, 제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법률 델파이 조사
- 2019년 1월 29일 북한재난의료지원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 행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짐.